

- 비상구 폐쇄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 등 -

##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를 중점단속 안내

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,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대상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,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,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, 이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

이에 경기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,

귀 대상에서는 비상구 상시개방, 소방시설 정상유지,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.

귀 대상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

### 주요위반 사례

- ◆ (복합건물)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 행위 : 100만원 과태료 부과(소방시설법)
- ◆ (근린생활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: 200만원 과태료 부과(소방시설법)
- ◆ (판매시설)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행위 : 8만원 벌칙금 부과(도로교통법)

### 【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】

- 단속범위 :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, 소방시설 차단, 불법주차
- 위반 시 조치사항
  - 비상구 폐쇄 : 「소방시설법」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- 소방시설 차단
    - ▶ 「소방시설법」 제48조에 따른 5년(7년, 10년)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(7천만원,10억원) 이하 벌금
    - ▶ 「소방시설법」 제53조 제1항 제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- 불법주차 : 「도로교통법」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

# 구 리 소 방 서 장

비상구 폐쇄 등

주요 위반 사례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난(직통)계단 통행 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</li> <li>- 계단실 방화문(자동방화셔터)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</li> <li>- 비상구(출입구 포함)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</li> <li>-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</li> <li>-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</li> <li>- 기타 피난·방화시설을 폐쇄,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</li> </ul>

소방시설 차단

주요 위반 사례	
<p>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 펌프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펌프 토출 측 주 밸브 폐쇄·차단</li> <li>-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</li> <li>-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</li> <li>-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</li> </ul>
<p>수신반 동력(감시)제어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하는 경우</li> <li>-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</li> <li>-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</li> <li>- 주경종·지구경종 스위치 누름(정지)상태로 방치하는 경우</li> <li>- 기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 등</li> </ul>

불법주차

불법주차의 단속장소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(회전)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(통행)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-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(5m 이내)</li> <li>-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(5m 이내)</li> </ul>